



Monthly Customs Newsletter



[대표관세사 인사말]

계절의 여왕 5월답게 어느새 주변에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다시 새로운 시작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5월은 우리 주변의 가까운 사람에게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평소에 미처 전하지 못했다면 편지와 꽃과 함께 따뜻하고 훈훈한 5월을 맞이해보시기 바랍니다.

5월의 푸름처럼 늘 새롭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용남



【 관세동향 】

▶ 관세청, 중소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확대

관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인 'CARE Plan 2015'를 3월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케어 플랜(CARE Plan)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영위기 극복과 회생지원을 위한 관세청의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으로, 지난해 134개 중소기업에 세금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혜택과 3,190개 업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안내하는 등 총 5,700여개 업체에 약 3,600억원의 지원 효과를 냈다.

올해 시행하는 'CARE Plan 2015'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우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나눠 내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에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 정보를 알려주거나 세관장 직권으로 환급해주고, 수출신고만으로도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생 의지가 있는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5%)만이라도 납부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압류처분 대신 수입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명단 통보를 유예하는 등의 회생지원도 계속한다.

이와 함께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을 희망하는 중소 수출기업에는 최대 1,600만원의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성실 납세 중소기업에는 무담보 월별납부를 허용해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납부기한을 15일에서 최대 45일까지 연장하는 등 납세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동안 최근 2년 이내에 조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은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자격에서 제외했으나, 단기 체납 발생 이후 1개월 내 완납한 체납이력자에 대해서는 일반과 똑같이 지원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통관 후 납세자가 스스로 추가 납부하는 수정·보정세액도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 세종(稅種)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은 통관·추징세액 및 과태료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할 수 있었다.

아울러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요건을 기존 '부과액의 1/3 이상 선(先)납부'에서 '부과액의 5/100 이상 선(先)납부'로 완화해 납부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배려했다.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으로 약 6,000여개의 중소 수출입업체에 약 4,0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 관세동향 】

▶ **제조업 트렌드, '無 공장 제조방식'이 뜬다!**

글로벌 네트워크 생산 모델이 널리 퍼지면서, 상품 기획, R&D, 디자인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제조는 외부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공장 없는 제조업체가 점차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월 6일 발표한 '無 공장 제조업체의 부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부품의 모듈화 및 표준화 진전, 3D 프린팅 등 제작도구 보급, 제조 전문기업 인프라 확산 등으로 無 공장 제조방식이 늘었다며, 우리 중소기업도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無 공장 제조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2년과 2012년 사이 S&P 500대 기업 내 제조업체 수는 239개에서 225개로 줄었지만, 無 공장 활용기업의 수는 67개에서 105개로 크게 늘었다.

이 보고서는 無 공장 제조기업은 외부 생산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웃소싱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과거 아웃소싱 활용 동기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엔 상품 기획, R&D 등에 집중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tization)'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도 자사의 핵심역량을 잘 고려해 無 공장 제조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전기전자(가전), IT, 의류, 식품 등 기술격차가 크지 않고 부품 모듈화가 상당 부분 진전된 분야일수록 기존 기술과 부품을 다른 방식으로 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새로운 유통채널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 직판도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의류, 화장품, 소형 IT 등은 기술격차가 적고 모듈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성숙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객이 인식하기 어려운 곳은 모듈화 부품으로 대체하고, 몇 가지 강점 부분에 핵심역량을 쏟는 無 공장 제조방식이 전략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국내 無 공장 제조업체는 주로 해외 생산공장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부족, 해외 생산공장 관리의 까다로움, 제조시설 미등록에 따른 지원 배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트렌드를 고려한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관세동향 】

▶ 美 금리 인상 이후 수출 전망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논의 배경과 인상 시기, 파급효과 및 對美 수출전망을 담은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수출 기상도' 보고서를 4월 13일 발표하고,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우리 수출 날씨는 '가전 맑음', '철강 흐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목표 기준금리를 0.5~ 0.75% 내외, 금리 인상 시기를 9월 이후로 전망하고, 금리 인상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 수출산업별로 다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겠지만,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축적 등으로 우리 경제의 내성이 강해져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경기회복과 저유가,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에 힘입어 對美 수출증가세가 계속되겠지만, 엔화 가치 하락은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중인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산업별로는 유가 하락과 금리 인상에 따른 세일오일 산업 투자 위축으로 소유관 등 철강제품 수출이 줄고,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농업·광업·에너지 분야의 기계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 산업은 금리 인상이 차량구매를 위한 대출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대부업체 간 경쟁과 노후차량 교체수요, 신차구매 증가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시장은 오피스, 인프라, 숙박시설의 수요 증가로 호황을 예상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비용 증가가 우려되며, 가전·반도체시장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지만, 신제품 출시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수요가 증가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OTRA 고상훈 선진시장팀장은 "경제 주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 시기와 증가 폭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지만, "수출산업마다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므로, 분야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관세동향 】

▶ 위안화, 세계 5대 결제통화 진입... 자국 통화로 무역하는 중국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면서 이전 무역도 자국 통화인 위안화로 결제하는 시대가 왔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 기업도 위안화 무역결제를 검토할 시기가 온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4월 14일 내놓은 '최근 위안화의 국제화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4월부터 위안화에 대한 무역결제를 허용한 이후 매년 30%에 육박하는 신장률을 기록해 지난해 위안화를 통한 수출입 결제액은 5조 9,000억 위안에 달했다. 이는 2011년의 1조 6,000억 위안보다 3.7배가 늘어난 것이다.

중국 전체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9%에서 22.3%로 뛰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안화 결제비중이 전년보다 10.7%p 높아져 가속도를 받는 모양새다. 이처럼 위안화 결제비중이 높아진 것은 중국정부가 지역별로 제한을 뒀던 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와 국제 투자에 대한 규제를 2011년에 완전히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위안화는 캐나다 달러와 호주 달러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결제통화 순위 5위에 진입했으며, 조만간 일본의 엔화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월만 해도 위안화의 국제 결제통화 비중은 0.63%로, 순위는 13위에 불과했다.

최근 위안화의 국제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우리 기업은 전체 거래액의 대부분(95%)을 달러화로 결제하고 있어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이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이 시급한 상황에서 위안화 결제를 통해 중국 바이어에게 환전수수료를 절감해 주고 환율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 안정적인 마케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안화 결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중국 내 자회사가 있는 경우 환전수수료 절감 등에 대한 이점을 한국 본사가 누릴 수 있어, 최근 일부 국내 기업은 본·지사 간 무역은 물론 투자금을 위안화로 송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협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위안화의 국제화는 중국정부의 중점 정책이다."며, "환변동 위험, 은행 수수료, 중국 내 바이어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안화 결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관세동향 】

▶ 우리 수출기업, 내수기업보다 생산성 높지만 매출은 부진

지난해 원화 절상 및 유가 급락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3.9% 감소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업체수의 비중은 2013년 33.3%에서 지난해 38.4%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월 22일 발표한 '2014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경영지표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수출기업이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1인당 연구개발비)와 생산성(1인당 영업이익)에서 내수기업보다 각각 3.4배, 1.7배 가까이 높았으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은 -3.9%로 내수기업(-0.4%)보다 부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원화 절상(원/달러 환율 -3.8%)과 유가 급락(-17.0%)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과 원유 관련 주요 정유, 화학, 조선업체의 매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나빴다고 설명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수출 대기업은 수출 중소기업과 비교해 영업이익률이 양호했으나, 매출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경영실적 악화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자보상비율)도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체 수의 비중은 2013년 33.3%에서 지난해 38.4%로 늘었으며, 최근 4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출기업 수의 비중은 10.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무역연구원 문병기 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환율 및 유가 변동성에 대비해 물류비 절감, 제조공정 축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TA 뉴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1.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원산지증명 방식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과 수출자 등이 직접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는데, 한·중 FTA에서는 기관발급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양측은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자국법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기관증명 방식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한·중 FTA가 아직 발효되지 않아, 국내법화 하지는 않았지만, 한·ASEAN FTA, 한·인도 CEPA 등 기존에 체결한 FTA 중에서 기관증명 방식을 채택한 협정은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양측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자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명, 연락처, 인장건본 및 관련 양식과 서류를 상대국 세관당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서 중국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및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

한·중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항력이나 뜻하지 않은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물품을 선적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물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해 소급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적 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6.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7.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가?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 제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포괄증명이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작성일부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FTA 뉴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에 관하여**

8.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다수의 품목을 기재할 수 있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다수의 품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최대 20개의 품목을 초과해 기재할 수 없습니다.

9.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작성요령은 반드시 출력해야 하나?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작성요령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 기재 또는 인쇄할 필요가 없습니다.

10. 원산지증명서는 한글로 작성할 수 있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한글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뒷면은 영어, 중국어 또는 한글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11.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한·중 FTA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나?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양식과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APTA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특혜관세 적용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12.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는가?

한·중 FTA에서는 협정문에 전자적으로 서명·날인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13.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방법은?

협정상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한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기존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진정등본을 발급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발급일자를 포함한 '진정등본' 문구를 포함하게 됩니다.

14.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방법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신고 수리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 오탈자, 수량, 품목번호 등의 참고,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때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및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발급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5. 한·중 FTA에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도입되는가?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으나, 최종적으로 수출국에서 지정한 권한 있는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협정 발효 4년 후에 원산지 증명방식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함으로써 추후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도입에 대해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FTA 뉴스]

▶ 한·EU FTA 개인물품 적용

질의 : 프랑스 백화점에서 가방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구매영수증만 제출하면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프랑스는 한·EU FTA의 협정대상국으로,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구매영수증과 함께 현품에 협정체결국(EU)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000달러 초과 ~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은 구매영수증에 EU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문안(스탬프 가능) 및 판매자의 서명이 기재된 구매영수증과 함께 현품에 협정체결국(EU)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면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은 원산지신고문안(인증수출자번호 반드시 기재)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 현품에 협정체결국(EU)에 원산지표시를 확인해야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매영수증으로 협정세율 적용이 안 될 때는 보통 아래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 1,000달러 이하 물품 :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EU연합국이 아닌 국가로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 경우

- 1,000달러 초과 ~ 6,000유로 이하 물품 : 영수증에 ① 원산지신고문안이 없는 경우, ② 판매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③ 원산지신고문안 및 판매자의 서명 모두 없는 경우, ④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 신고문안과 불일치할 경우, ⑤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EU연합국이 아닌 국가로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 경우

- 6,000유로 초과물품 : ① 원산지신고서가 없는 경우, ② 원산지신고서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③ 원산지신고문안이 협정에서 정하는 신고문안과 불일치할 경우, ④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EU연합국이 아닌 국가로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 경우

∴ 결론적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구입하는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각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입국 시 세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EO 뉴스]

▶ **AEO 재공인 심사기간 줄어든다**

관세청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갱신 시 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8일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이 부실한 업체가 장기간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보완해 재공인받는 문제와 심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법규준수 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관세청장 이행 확인기한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공인이 취소된 종합인증우수업체에 일정 기간 공인신청을 제한했으나, 상위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 조항을 삭제하고, 종합인증업체에 주는 혜택에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세관장 확인물품 중 일부 물품의 세관장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통관절차 등의 특례에 추가했다.



【 품목분류 】

▶ **고가시계의 품목분류**

질의 : 고가시계를 분류하는 HS 9101과 9102를 나누는 기준이 귀금속 여부인데, 귀금속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스테인리스스틸로 만든 제품은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관세율표 제91류 주 제2호에 “제9101호에는 케이스 전부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위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휴대용 시계는 제9102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101호 해설서에 “이러한 시계는 보석이나 천연·양식진주와 함께 세트가 되기도 하며 귀금속제의 팔찌(젼 세트 여부 불문)나 귀금속제의 덮개가 부착되기도 한다.”, “다만 케이스가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된 시계로서 뒷면이 강철로 된 것은 귀금속을 박아 넣은 비금속제 케이스로 된 휴대용 시계와 같이 제9102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101호에 분류하는 시계는 ▲케이스 전부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 ▲케이스 전부를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위의 재료(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이며, 케이스가 귀금속을 박은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또는 시계 뒷면이 강철로 된 것은 제9102호에 분류합니다.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 가목에 “귀금속이란 은·금·백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는 귀석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7호에 “이 표에서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란 금속을 기본으로 한 재료의 한 면 이상에 댄접·납접·용접·열간압연이나 이와 유사한 기계적 방법으로 귀금속을 입힌 것을 말하며,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비금속(卑金屬)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속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은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보고(제71류 주 규정) 있으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이라는 규정에 따라 제91류 주에서 “비금속에 귀금속을 박아 넣은 것”을 제91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시계(제9101호)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한편 물품 금액으로 제9101호와 제9102호를 나누는 것은 아니며, 제15부 주 제3호에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덴·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레늄·탈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인리스 재질이라면 비금속제품이므로 제9102호에 분류합니다.



【 품목분류 】

▶ 카페라테(caffe latte)

카페라테(caffe latte)는 압축한 원두 분말을 뜨거운 물로 고압 추출한 에스프레소(espresso)에 우유(latte)를 첨가한 커피의 한 종류다. 기름진 식사 후 마시는 진한 에스프레소와 달리 우유를 첨가해 부드럽고 풍미와 향미가 있는 카페라테는 이탈리아에서 아침에 식사용으로 마신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는 드립 커피에 우유(au Lait)를 첨가한 것으로 프랑스인이 크루아상과 곁들여 마신다는 카페오레(Cafe au Lait)도 있다.

카페라테는 보통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약 1:4의 비율로 유지하다 보니 온수에 녹여 바로 음용이 가능하도록 제조한 인스턴트 제품은 우유의 함량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관세율표상의 분류에 있어, 우유를 분류하는 제4류와 제0401호에서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는 제19류를 검토할 수 있다.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한다.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4류 총설에 제0402호에 분류하는 물품에 허용된 첨가물과 사용 목적 등을 특정하고 있는데, 첨가물에는 안정제, 비타민, 산화방지제 등이 있다. 본 품은 제4류에서 허용하는 첨가물 외에 커피를 첨가해 조제한 것이므로,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품(지방 함량 30% 이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품은 제0401호부터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제 1901.90-2010호로 분류된다.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